



- 작성요령 -

① 의뢰처

성명 : 조사를 의뢰하고 계약하는 당사자 명시

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번호 : 의뢰처(자)의 번호로 기입, 사본 첨부

주소 : 우편 수령 가능처로 명시

연락처 : 상시 연락가능 하도록 명기

(기관이 의뢰할 경우 해당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)

② 대상지역

소재지 : 사업대상지 대표주소 명기

면적 : 사업대상지 전체면적

(진입도로, 주차장부지 등 형질변경 지역은 모두 해당)

사업명 : 추진하는 사업명 기재

현 상 : 사업대상지 현재의 상태를 말함

(나대지, 경작 중, 건물철거후 혹은 전 등으로 상세하게 작성)

③ 의뢰사유 : 지표조사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의무 시행 및 기본 지표조사 면적이 아니지만 지자체 조치 등 특수사항 기록

④ 구비서류 : 도면은 가급적 CAD 도면으로 제출

1. 사업에 대한 개략적 계획서 및 위치도

2. 대상구역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도면(지적도나 구적도 등에 사업범위 표시) 등

근거 : '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' 제6조(자료제공 등 상호협력)

① 제5조에 따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제공 및 현장설명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 평·단면도(축척 1/5,000이상의 지적도 상에 그린 계획 도면)

2. 사업계획서

3.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

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문화재 정보 및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